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2. 19.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2. 3.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5. 2. 4.

다. 상정일자: 제273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2025. 2. 1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가. 제안이유

아르바이트 사업 운영시 참여 자격을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 운영하여 대학 재학 여부에 따른 차등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
- 조례 목적 변경(안 제1조)
- 조례 대상 변경(안 제2조)
- 사업 신청 서류 변경(안 제6조)

- 대상자 확대에 다른 용어 정비 등

다. 참고사항

- 「고등교육법」 제2조
-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 입법예고 : 2024. 12. 26. ~ 2025. 1. 15. 결과: 의견 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① 조례의 개정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 “비(非) 대학생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 인권위원회 등의 시정권고를 참고하여, 아르바이트 사업 운영시 참여 자격을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 운영하여 대학 재학 여부에 따른 차등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타 자치단체 권고 사례

인용일	기관	권 고 내 용
'23. 4. 18.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256700) 여수시 행정인턴 사업에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생으로 지원자격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고
'23. 9. 29.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 회의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 제시한 업무들은 반드시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등의 학력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인턴' 제도로 전환할 것을 권고
'23. 11. 17.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23신청-23)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은 모집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비(非)대학생 청년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여 학력에 의한 차별 및 평등권을 침해라고 결정

② 주요 개정 내용

- **조례 명칭 변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임.

단순 학업과 병행하는 대학생의 아르바이트에서 벗어나, 행정업무 체험을 통한 실무 경험 습득의 취지를 강조함.

- **제1조 용어 수정**

“대학생”을 “행정업무 체험을 위한”으로 변경
참여 대상의 본질적 목적을 ‘행정체험’으로 명확히 함.

- **제2조 (참여 자격 관련) 개정**

“대학생”이라는 용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체험” 등으로 대체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참여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의 범위를 두 가지 항목(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생과 청년기본법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구분하여 명시. 또한 종전 “대학생” 표기를 “사람”으로 수정하여 보다 포괄적인 참여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임.

- **제4조, 제5조, 제6조 등 관련 조문의 용어 및 표현 수정**

“대학생”을 → “참여자” 또는 “신청자” 등으로 통일하여, 대상자 및 업무수행 주체를 명확히 함.

신청 서식 및 제출 서류에 관한 문구를 “별도의 신청 서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임.

민원 응대 시 사용되는 용어(예, “공익실현” → “공익 실현”) 등의 소폭 수정으로 문장의 가독성 및 명확성을 향상하는 내용임.

- **제9조 등 일부 조문의 내용 수정**

기존 “이해증진을 위한 현장실습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

로그그램을 운영”이라는 표현을 “이해증진을 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을 추진”으로 수정하여 프로그램 추진의 주체와 범위에 대한 모호성을 해소하는 내용임.

③ 개정 내용 검토

○ 긍정적 측면에서 대상 확대 및 명확화

- “대학생”이라는 한정적 용어를 “행정업무 체험을 위한” 등으로 수정하여, 보다 다양한 연령대와 학력 배경을 가진 참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제2조에서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도 참여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청년층의 행정 현장 체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 용어 통일 및 문장 명료화

- 조례 전반에 걸쳐 “대학생”을 → “참여자” 또는 “신청자”, “학생”을 → “사람” 등으로 용어를 일관되게 변경하여, 해석의 혼동을 줄이고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높임.
- 신청 서류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예: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서 등)하여 자격 확인 절차를 강화함.

○ 업무 및 지원 내용 보완

- 민원업무와 관련된 행정체험의 성격을 강조하여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공공행정 체험 및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함.

○ 대상 범위의 모호성 제거 필요

- “행정업무 체험을 위한”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의 업

무를 포함하는지, 예를 들어 행정 전반 중 어떤 부문에 한정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좋음.

- 청년 자격 요건에 있어서 “미취업” 상태의 기준 및 확인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이 필요함(예: 구체적인 증빙 서류의 명시).

○ 신청 및 선발 절차의 구체화 필요

- 제6조 관련하여 “별도의 신청 서식” 사용, 제출 서류 등 세부 요건에 대해 별도 안내문 또는 부칙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선발 후 근무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추가적인 운영 지침(예, 선발된 참여자에 대한 후속 교육 및 평가 체계 등)이 있다면 이를 반영할 것을 권장함.

○ 용어 및 문구의 통일성 재검토

- 일부 조항에서 “참여자”, “신청자”, “사람”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있으므로, 전체 조례에서 일관된 용어 사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제2조, 제6조, 제8조)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여 행정체험을 통한 공공행정 인재 육성과 학력 차별 및 인권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제2조제2호에서 청년의 정의를 「청년기본법」에 명시한 19세에서 34세 이하로 규정한 것¹⁾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1)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기본 조례」에서의 청년을 19세에서 39세 이하로 규정한 것²⁾과 「청년기본법」의 청년의 정의가 19세에서 39세로 변경하여 국회 입법 개정 중인 점³⁾을 감안하면 청년의 정의를 일관되게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조항에서 “참여자”, “신청자”(제6조) “사람”(제2조, 제8조) 등의 용어의 혼용은 통일성 있는 용어 사용을 위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대상 범위와 신청·선발 절차에 대한 세부 운영 지침을 보완하여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하고, 참여자 및 관련 부서 간의 협력체계를 명확히 하는 후속 조치로 세부 지침 마련, 실제 운영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2)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2025.1.13. 발의(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최근 청년의 취업,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져 청년정책의 주요대상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청년을 규정하는 연령이 상향되고 있어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도록 규정하여 청년지원의 수혜자를 늘리고,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별표 1] 관계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66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청년기본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3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5-7 관련
----------	---------

발의년월일 : 2025. 2. 19.

발 의 자 :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도록 입법 개정중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청년기본법」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제2조제2호 “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를 “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청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를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청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대상) <u>대학생</u>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 라 한다)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대상) <u>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체협 ————— 접수시</u> <u>작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u>	제2조(대상) (개정안과 같음)
1. <u>학생 본인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u> <u><신 설></u>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	1. (개정안과 같음)
	2.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2.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청년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대학생</u>	3. ----- ----- <u>사람</u>	3. (개정안과 같음)